

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오세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51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1.

발 의 자 : 오세희 · 전진숙 · 김종민
송옥주 · 이수진 · 허성무
박정현 · 권향엽 · 전은수
서영교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여성기업 육성을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업무범위를 확대하며,
협회에 대한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,

거짓이나 부정의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거나 여성기업의 기
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여성기업 확
인 신청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며, 정당한 사유없이 여
성기업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
및 보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
하는 등 여성기업 확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,

여성기업 확인 취소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
있도록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여성기업 확인을
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하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협회의 업무 범위에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를 추가하고(안 제14조제1항),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지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(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.
- 나.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을 “1년 이내”에서 “3년 이내”로 변경하고, 확인 신청 제한 사유에 “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”를 추가함(안 제20조의2제3항).
- 다. 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“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의4에 따른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”를 추가함(안 제20조의3제1항제4호 신설).
- 라. 부도·폐업 등의 사유로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할 경우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의3제2항 단서 신설).

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제목 “(협회의 업무)”를 “(협회의 업무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9호(중전의 제8호) 중 “제7호”를 “제8호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협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협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.

제2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년”을 “3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20조의3제1항제1호”를 “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”로 한다.

제20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의4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
제20조의3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<u>협회의 업무</u>)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~ 6. (생략) <u><신설></u> 7. (생략) 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여성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14조(<u>협회의 업무 등</u>) ①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u>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</u> 8. (현행 제7호와 같음) 9. ----- 제8호----- ----- ----- ② <u>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</u> ③ <u>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협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협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.</u>
제20조의2(<u>여성기업의 확인 등</u>) ① · ② (생략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<u>1년</u> 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	제20조의2(<u>여성기업의 확인 등</u>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3년</u> ----- -----

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. 1. (생략) 2.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 ④ (생략) 제20조의3(여성기업의 확인 취소)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 제20조의3(여성기업의 확인 취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. ----- ----- 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의4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</u> ② ----- ----- ----- ---. <u>다만,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
---	---